

■ 목 차

■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건설법 개정..... 2
 인도네시아 독점규제법 개정안 국회 하원에 제출 2
 인도네시아 대법원, 기업 범죄에 관한 대법원 규정 2016년 제13호 발효 2
 인도네시아 OJK, 온라인 대출서비스에 관한 규정 도입..... 3
[중국] 민법총칙 10월부터 시행..... 4
 최고인민법원, 「혼인법 사법해석(2)에 관한 보충규정」 공표 4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사법해석 및 규범성문서」 공표 4
 교통운수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세칙」 개정안 공표..... 5
[일본] 민법개정안 중의원 통과..... 6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대표사무소 관련 개정 법령 소개..... 8
[중국] 민법총칙 제정 11

■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은행인 BCC 지분 매각 자문..... 13
[베트남] 한국투자파트너스를 대리하여 베트남 온라인 게임업체 '아포타(APPOTA)'의 상환우선주 (RCPS) 인수를 통한 투자 관련 자문..... 14
 아워홈을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문 14
[중국] 한국 변속기 제조업체의 중국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 16
 한국 신용카드사 중국 자회사의 사업 목적 확장 관련 자문..... 16
 한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중국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 17
 한국 화장품업체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경영 관련 법률자문..... 17

■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건설법 개정

인도네시아 건설법이 17년 만에 개정되어 2017년 1월 12일 법률 2017년 제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건설법은 건설서비스업의 분류, 건설계약의 언어조항, 건설근로자 분류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구 건설법에서 언어본 간의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 당사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개정 건설법에서는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어본의 해석을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독점규제법 개정안 국회 하원에 제출

인도네시아 독점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하원에 제출되어 개정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은 2014년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독점규제 및 부정 경쟁 방지를 위한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KPPU)의 역할 강화이며, 합병 전 신고의무 강화, 자진신고 감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 기업 범죄에 관한 대법원 규정 2016년 제13호 발효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총 37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업 범죄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을 발효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기업집단에서의 모회사, 계열회사의 형사책임, 인수·합병 시 발생한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 법원에서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 형사 제재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위 규정은 기존의 법률 및 규정에 산발되어 있던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OJK, 온라인 대출서비스에 관한 규정 도입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기구(OJK)는 금융 기술을 이용한 대출서비스에 관한 OJK규정 No. 77/POJK.01/2016을 발효하였습니다. OJK내 온라인 대출서비스업(또는 P2P대출)을 관할하는 소관 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P2P대출 플랫폼은 대주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대주와 차주가 루피아화(IDR)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P2P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정들을 제시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민법총칙 10월부터 시행

민법총칙이 지난 3월 15일 중국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기본원칙,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 및 소송시효 등 기본적인 민사법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민법통칙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민법총칙은 기존 민법통칙과 병행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법률이 상충되는 경우,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민법총칙이 적용됩니다. 민법총칙의 통과는 민법전 편찬 작업의 첫 단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다음 단계로 민법전의 각론 편찬 작업이 2020년 통과를 목표로 곧 개시될 예정입니다.

최고인민법원, 「혼인법 사법해석(2)에 관한 보충규정」 공표

지난 2월 28일,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사법해석(2)에 관한 보충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새 규정은 배우자가 도박, 마약 등 위법, 범죄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사법해석 및 규범성문서」 공표

지난 3월 1일, 최고인민법원은 집행에 관한 3개의 사법해석 및 규범성문서를 공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사집행 절차 중 재산 조사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공간기관 등 부서와의 협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 정보 관련 규정」은 신용불량 명단의 기간 규정을 추가하고, 피집행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으로 등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대금및물품에대한관리업무규정」은 하나

의 사건 금액을 하나의 계좌로 집계하는 관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집행 대금 및 물품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교통운수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세칙」 개정안 공표

최근 교통운수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세칙」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국제선박 운수업무 및 국제선박 관리업무 취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신청하도록 하였던 바, 기존의 두 업무에 대한 경영 허가를 기업 설립 전에 하도록 한 사전 허가를 사후 허가로 변경하였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민법개정안 중의원 통과

주로 채권(債權) 관계 규정을 위주로 한 민법개정안이 2017년 4월 14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채권 부분에 대한 개정은 민법제정 이래 약 1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제정 이래 약 120년간의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고 민법을 국민 일반에게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관점에서 마련되었고, 소멸시효 기간의 통일화 등 시효에 관한 규정 정비, 법정이율을 변동시키는 규정의 신설, 보증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 정비, 정형약관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의사의 진료에 관한 채권은 3년, 음식점의 음식료에 관한 채권은 1년 등 단기소멸시효의 특례를 모두 폐지하고, 소멸시효 기간의 통일화를 도모하는 등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2. 법정이율

현행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한 후 시중 금리 동향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를 도입함

3. 보증채무

사업용 용자채무의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주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이사, 취체역 등인 경우를 제외함)에는 공증인이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

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보증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4. 정형약관

정형약관에 의해 계약 내용이 보충되기 위한 요건 외에 정형약관을 준비한 자가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형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 등 불특정다수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정형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정형약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5. 기타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 장래 채권의 양도가 가능한 것,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통상적인 사용수익에 의해 발생한 감모 등에 대해서는 그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확립한 판례 법리 등을 명문화 함

6. 시행기일

이 법률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령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함

[자료 :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 참조]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대표사무소 관련 개정 법령 소개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하기에 앞서 현지 시장 조사 및 주 활동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사무소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는 기업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사무소의 활동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모두 본사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노동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며, 세금 신고번호를 부여받는 등 베트남 법령이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사를 위하여 여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주요한 법령 개정이 있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대표사무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 축소

개정 전 법령하에서 외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① 연락사무소 운영
- ② 본사의 사업 홍보
- ③ 본사의 제품 구매, 판매 및 용역 제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시장 조사
- ④ 본사가 베트남 기업과 체결하거나 베트남 시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이행 감독
- ⑤ 기타 베트남 법령이 허용한 활동

그런데 2016년 1월 25일 개정된 Decree 7/2016/ND-CP에서는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를 연락사무소 활동, 본사의 사업 홍보 및 시장 조사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과 비교할 때, 본사가 체결한 계약의 이행 감독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본사 사업 활동의 홍보 및 현지 사업 기회를 찾는 조사 활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사가 체결할 계약의 상대방 물색과 조사, 협상 등 계약 체결 전 상황에서의 본사를 위한 영업 보조 활동은 가능하고,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의 이행 감독 활동이 금지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거래 실무상 대표사무소의 주된 기능은 계약 체결 전의 홍보, 조사, 협상 등이므로, 법령 개정으로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이행 독촉과 청구, 대금 수령 등 계약 체결 후의 관리 감독 활동은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사무소 명의의 계좌 개설 제한

은행 등 수신기관의 계좌 개설과 이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베트남 중앙은행이 2014년 8월 19일 제정한 Circular 23/2014/TT-NHNN(이하 'Circular 23')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6년 12월 26일 Circular 32/2016/TT-NHNN(이하 'Circular 32')을 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단체의 경우 권리능력을 갖는 법인격체로만 제한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래 Circular 23에서는 법적 권리능력을 갖는 '법인(Legal Entities)'을 비롯하여, 법인격이 없는 개인 기업(Private Company), 가계(Household Business) 및 기타 단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Circular 32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예시를 삭제하고 법적 권리능력을 갖는 법인을 뜻하는 'Juridical Persons'('Legal Entities'와 같은 의미)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에 따르면 법인격이 없는 대표사무소, 지점, 외국 건설사의 현장사무소(Project Management Office), 동업조합(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사무소 등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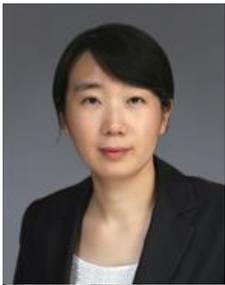
것으로 귀결됩니다. 반면 이러한 해석은 다른 법령에서 대표사무소 등이 인가받은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상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중앙은행은 Orient Bank의 질의에 대해 회신에서, 대표사무소 등은 본사 명의로 그 위임을 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중앙은행 해석은 베트남법인의 대표사무소 등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등에 게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대표사무소 등이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대금 수수를 자신 명의 계좌로 한다면, 이러한 거래는 역내 거래로써 VND로 결제를 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합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면 그 자금 집행 주체도 본사가 되어야 해서, 거래계약도 본사 명의로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대표사무소 등이 자신 명의로 근로계약, 사무실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본사가 직접 이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외국법인이 사용자가 되어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거래계약은 외화(USD 등) 계약도 가능하게 되며, 세금 과세권과 적용 세법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Orient Bank의 질의회신이 유일한 유권해석으로 보입니다. 질의회신은 대외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Orient Bank 외의 일반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시중 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민법총칙 제정



(법무법인 지평 김옥림 외국변호사)

지난 3월 15일 중국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민법총칙이 통과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중국의 민법체계는 크게 1987년부터 시행된 민법통칙, 1999년부터 시행된 계약법, 2007년부터 시행된 물권법, 그밖에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으로 구성된 가족관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 민법전의 제정은 오랜 기간 중국 법률가들의 숙원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통일된 민법전을 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2007년 물권법 시행에 이어 민법총칙을 제정한 것은 통일 민법전 제정을 향한 크나큰 한걸음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기본규정,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시효, 기간의 계산, 부칙으로 총 11장, 206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기존 민법체계 하의 법률과 비교할 때, 상속과 증여 관계에서 태아의 민사권리능력을 인정한 점(민법총칙이 제정되기 전에도 상속법에 의하여 태아의 상속권리는 인정되었지만 민법총칙에서는 상속 관계 뿐만 아니라 증여 관계에서도 태아를 민사권리능력자로 인정하였음), 민사행위무능력자의 나이를 10세에서 8세로 하향 조정한 점, 고령화 사회 등을 감안하여 성년 후견자 제도를 도입한 점, 개인정보를 민사권익의 보호대상으로 천명한 점, 인터넷 가상 재산을 재산 보호대상으로 천명한 점,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를 향하여 타인을 구조하다 손해를 입은 '의인'에 대한 보상 내지 의인의 면책 사유를 명시하는 처방책을 마련한 점 등은 사회발전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잘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법총칙에서는 민법통칙에서 정한 2년의 일반적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여 짧은 소송시효로 인한 폐단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기존 민법통칙의 '공민(자연인)'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일괄 '자연인'으로 수정하여 민법 본연의 법정신에 더욱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총칙의 개정으로 통일 민법전의 입법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각 분편의 편찬을 완료하여 빠르면 2020년에 통일 민법전의 편찬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 ■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은행인 BCC 지분 매각 자문

지평은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은행인 BCC 지분 매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BUSINESS KOREA - KB Kookmin Bank Begins Talks of Kazakhstan's BCC Sale \(2017. 2. 2.\)](#)

[담당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이승민 외국변호사 ·
모스크바 사무소장



손영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한국투자파트너스를 대리하여 베트남 온라인 게임업체 '아포타 (APPOTA)'의 상환우선주(RCPS) 인수를 통한 투자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투자파트너스를 대리하여 베트남 온라인 게임업체 '아포타(APPOTA)'의 상환우선주 (RCPS) 인수를 통한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뉴스1 - 국내 벤처캐피탈, 베트남 게임사에 500만달러 투자\(2017. 4. 10.\)](#)

[담당 변호사]



유동호 외국변호사 · NGUYEN Thi Huong
하노이 사무소장 외국변호사

아워홈을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문

지평은 아워홈을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금융신문 - 아워홈 · CJ제일제당 '포스트차이나' 베트남 주목\(2017. 4. 24.\)](#)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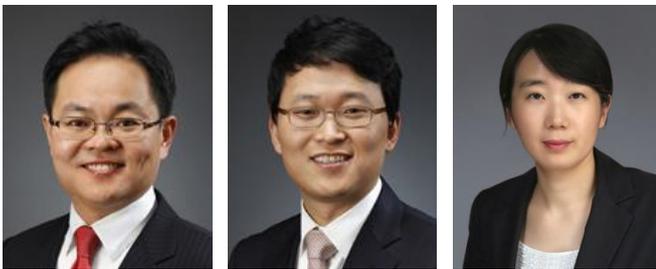
유동호 외국변호사 · 하노이 사무소장 NGUYEN Thi Huong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변속기 제조업체의 중국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변속기 제조업체의 중국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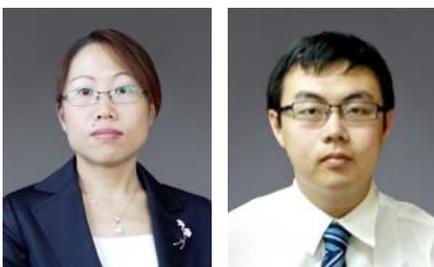


박영주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한국 신용카드사 중국 자회사의 사업 목적 확장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신용카드사 중국 자회사의 사업 목적 확장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한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중국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중국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한국 화장품업체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경영 관련 법률자문

지평은 한국 화장품업체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경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